

제주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단693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애

변론 종결2024. 2. 2.

판결 선고2024. 6.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이를 때에는 'C 토지', 'D 토지', 'E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22. 6. 28.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2. 6. 29. 접수 제284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B는 2022.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친동생인 피고에게 2022. 6. 2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B는 200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성립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2. 9. 21. 기준 본세 및 가산금 등 합계 239,900,080원(2021. 12. 31.까지 성립한 본세 213,731,6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조세체납자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B, F 등 G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서귀포시 H 전 1,283㎡(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H 토지는 B가 소유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피고는 이복남매인 B의 무자력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부정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5. 6. 26. I)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서귀포시 H 전 1,283㎡(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8. 3. 22.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여, 1982. 3. 18. 사망)은 1905. 1. 20. K(남, 1929. 10. 19. 사망)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J는 I과 K의 3남이었다.

한편 K은 I과 혼인 전에 장남 L(1958. 3. 15. 사망)를 자녀로 두었고, K과 I은 M, N, O, P(1977. 8. 13. 사망, 미혼), Q(1923. 4. 20. 사망), J(1960 5. 30. 사망)2) 를 자녀로 두었다. I과 K의 3녀인 O(2011. 3. 3. 사망)은 R(1998. 3. 13. 사망)과 혼인하여 G(1989. 1. 10. 사망)을 자녀로 두었다. G은 S와 혼인하여 B, F, T을 자녀로 두었고, 이후 U과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피고, V을 자녀로 두었으며, U과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W를 자신과 S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I과 J의 상속인 지위 등에 있는 S, B, F, T, 피고, V, U3) (7인)을 대표한 B는, 역시 I과 J의 상속인 지위에 있는 M(I의 장녀)의 상속인들인 X, Y, Z, AA, AB(5인)을 대표한 X와 2022.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H 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합의(이하 '2022. 3.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물건지: AE

1	C	전 (143평)	473	45,300	21,426,900	
2	E	전 (130평)	430	49,300	21,199,000	
3	D	전 (349평)	1154	23,300	26,888,200	
소계	622평	2,057		69,514,100		
4	H	전 (388평)	1,283	36,100	46,316,300	
합계	1,010평			115,830,400		

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H 토지는 I과 J의 상속재산인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B의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부동산특조법팀의 의견조회대상으로 망 M의 상속인 X 등을 찾게 되어 I씨측4) 과 J씨측5) 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J씨측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H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귀포시 부동산 특조법팀에 제출하지 아니하며, 보증신청인 B가 단독 상속등기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2조: J씨측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H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분배받지 않고 B가 단독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가로 4,500만 원을 받는다.

라) B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2. 1. 4. 법률 제18673호 실효, 이하 '구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22.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18.(I

사망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3. 1. 26.에 H 토지에 관하여 1960. 5. 30.(J 사망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서귀포시 AF 임야 14,281m²(이하 'A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22. 7. 경까지도 미등기상태로서 임야대장 소유자란에 '1934. 5. 28. 소유권이전, AE K'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B는 2023. 1. 26. 구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2023. 1. 26. AF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2. 6. 29.을 전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공동상속인이나 2022. 3. 합의의 상대방 측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2022. 5. 25.	AG	5,000,000	B와 그 배우자 AG에게 송금한 금액이다.
2022. 6. 24.	B	5,000,000	
2022. 8. 12.	B	2,000,000	
2022. 8. 19.	Y	5,000,000	2022. 3. 합의의 상대방 측인 Y에게 합의금 4,500만 원 중 일부로 송금한 돈이다.
2022. 8. 19.	Y	3,000,000	
2022. 6. 28.	AH	3,580,0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B 명의 등기, 피고 명의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에게 지급한 등기비용이다.
2022. 6. 28.	AH	932,610	
2022. 9. 28.	A	6,468,90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이다.
2022. 10. 26.	F	11,000,000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인 G의 법률상 배우자 S와 그 자녀 F, T 측에게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
2022. 10. 25.	F	50,000,000	
2022. 10. 26.	F	21,000,000	
합계	112,981,5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10, 11, 12, 13, 19, 20,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 B, F, T, 피고, V6) (이하 'B와 피고 측'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H 토지를 I, J로부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게 되었고, B와 피고 측은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당시 파악된 X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합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B와 피고 측이 상속받기로 한 다음, 다시 B와 피고 측 내부에서 B가 H 토지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S, B, F, T, V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위와 같은 B와 피고 측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쳐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B의 무자력 여부 및 피고의 악의 여부에 상관 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먼저 이 부분 쟁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J가 1960 5. 30. 사망하고 ○이 2011. 3. 3.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H 토지에 관한 G의 대습상속인인 B와 피고 측 내부의 법정상속분은 S 3/13, B, F, T, 피고, V이 각 2/13가 되는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결과 H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B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H 토지 가액 합계의 39.99%(= H 토지

가액 46,316,300원/이 사건 각 부동산과 H 토지의 가액 합계 115,830,400원 $\times$ 100%)를 분할받는 것이 되어 그 분할 비율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비율 15.38%(=2/13 $\times$ 100%)를 초과하는 점, ③ 여기에 B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등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른 상속재산인 AF 토지의 2021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 59,980,200원(= 개별공시지가 4,200원 $\times$ 14,281m²)까지 고려하면 더욱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 분할받은 상속재산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고진흥

별지

- 1) C, D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A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나 제적등본 등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T'의 오기로 보인다.
- 2) 1960. 5. 30. 사망한 J의 상속인으로는 유일하게 배우자 AD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J의 사망신고인이 AD이다), AD는 제적등본에 1959. 3. 1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98. 6. 2. 이루어진 신고에 의한 것으로 실제 사망일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 3) U은 G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상속인은 아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일정 상속지분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 4) S, B, F, T, 피고, V, U(7인)을 말한다. W는 G의 친생자가 아니어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 5) X, Y, Z, AA, AB(5인)을 말한다.
- 6) G은 U과 그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W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출생신고에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일단 W를 상속인에서 제외하기로 한다.